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- 1291호

「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 중 더 이상 작성·관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녹지자연도를 삭제하려는 것임.

### 2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녹색도시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(이유)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- 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
- 팩스 : 044-201-5574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(044-201-3749, 37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